

『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허훈입니다.
- ☐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54호
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☐ 교통유발부담금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근거하여, 대규
모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시
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현행 조례는 교통량 감
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
도록 하고 있으나,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나 자율휴무일
은 그동안 경감 사유에서 제외돼 왔습니다.
- 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매월 2회의
의무휴업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러한 날에도 동

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연면적 3,000m²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일을 실시할 경우, 해당 부담금을 최대 5%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규모 점포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,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